

##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 특별시장**

JUNO HAIR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 20130100025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 2013.01.30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 2025.12.29

www.junohair.com

junohair@junohair.com

[준오헤어]

## 정 보 공 개 서

(주)준오뷰티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준오뷰티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728 에브뉴준오 5층

Tel : 02-548-0605

Fax : 02-548-1584

경영재무본부 / 070-8889-0372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준오뷰티	준오헤어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728 애브뉴준오 5층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2.12.30	2003.1.2	송현석	02-548-0605	02-548-1584
	법인등록번호	110111-2682783	사업자등록번호	110-81-60003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송현석	준오헤어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728 애브뉴준오 5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송현석	02-548-0605	02-548-1584
이사	강운선	준오헤어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728 애브뉴준오 5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송현석	02-548-0605	02-548-1584
이사	김현철	준오헤어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728 애브뉴준오 5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송현석	02-548-0605	02-548-1584
감사	김영대	준오헤어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728 애브뉴준오 5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송현석	02-548-0605	02-548-1584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 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준오헤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준오헤어	로마신화 jupiter의 부인 juno를 의미
상 호	준오헤어 OO점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248011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232336
	The Avenue Juno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148144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340548 서비스표 등록번호: 40-1310798
		서비스표 출원번호: 40-2025-0065211 서비스표 출원번호: 40-2025-0065212
	C.PLOT	서비스표 등록번호: 40-1761507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sup>②</sup>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72,490,105	10,680,400	61,809,704	16,576,747	8,149,572	7,504,047
2023년	79,283,304	5,213,722	74,069,582	22,087,300	12,803,468	12,201,059
2024년	95,266,592	5,933,039	89,333,553	26,792,282	17,297,218	15,388,021

그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 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 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송현석	대표이사	2020.10~2025.3	(주)신세계 푸드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2025.4~2025.11	(주)신세계 푸드 고문	고문
			2025. 12. 1.~현재	(주)준오뷰티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강윤선	이사	2003.1.~ 2025. 11. 30.	(주)준오뷰티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2025. 12. 1.~현재	(주)준오뷰티 이사	
김현철	이사	2003.1.~ 현재	(주)준오뷰티 이사	채무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김영대	감사	2005.4.~현재	(주)준오뷰티 감사	감사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3		29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준오헤어]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호,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006.06.30. 등록	등록 제41-0134309	(주)준오뷰티	2026.06.30.
The Avenue Juno	상호,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007.05.03. 등록	등록 제41-0148144	(주)준오뷰티	2027.05.03.
	상호,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011.05.30. 등록	등록 제41-0210978	(주)준오뷰티	2031.05.30.
	상호,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011.05.30. 등록	등록 제41-0210977	(주)준오뷰티	2031.05.30.
<b>JUNO</b>	상호,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012.05.18. 등록	등록 제41-0232337	(주)준오뷰티	2032.05.18.
<b>JUNO HAIR</b>	상호,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012.05.18. 등록	등록 제41-0232336	(주)준오뷰티	2032.05.18.
	상호,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012.12.28. 등록	등록 제41-0248015	(주)준오뷰티	2032.12.28.

	상호,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012.12.28. 등록	등록 제41-0248012	(주)준오뷰티	2032.12.28.
	상호,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012.12.28. 등록	등록 제41-0248011	(주)준오뷰티	2032.12.28.
	상호,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015.12.05. 등록	등록 제41-0340548	(주)준오뷰티	2035.12.05.
	상호,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017.12.07. 등록	등록 제40-1310798	(주)준오뷰티	2027.12.07.
	상호,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021.08.09. 등록	등록 제40-1761507	(주)준오뷰티	2031.08.09.
	상호,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025.04.18. 출원			
	상호,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025.04.18. 출원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바로 전 3년간 [준오헤어]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159	9		5	11	163
2023	163	8		1	8	170
2024	170	8		1	8	177

[준오헤어]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

6. [준오헤어]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준오헤어]외 가맹사업을 경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준오헤어]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sup>2</sup> 당	상한	면적 3.3m <sup>2</sup> 당	하한	면적 3.3m <sup>2</sup> 당	
전체	177	1,613,147	19,605	11,630,031	64,745	465,535	5,864	
서울	114	1,698,827	20,783	11,630,031	64,745	513,247	7,156	
부산	6	1,182,889	18,817	2,049,422	42,907	465,535	8,299	
대구								
인천	4	1,595,689	19,438	2,598,948	27,057	1,075,828	11,271	
광주								
대전								
울산	4	753,794	10,417	836,758	12,809	673,588	8,268	
세종								
경기	48	1,544,422	17,845	3,471,039	44,131	633,311	5,864	
강원								
충북	1	1,318,470	23,505	1,318,470	23,505	1,318,470	23,505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7개 매장중 오픈 6개월 미만인 매장은 연간평균매출액 산정 및 면적3.3m<sup>2</sup>당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 하였습니다.(오픈6개월 미만인 매장 4곳 : 명동예술극장점, 사이버외대점, 안산중앙3호점,송도크리스탈오션점)

\*177개 매장중 영업 6개월 미만인 매장은 연간평균매출액 산정 및 면적3.3m<sup>2</sup>당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 하였습니다.(영업 6개월 미만인 매장 1곳 : 이대3호점)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 제출한 2024년도 손익계산서에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산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의 경영재무본부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8. [준오헤어]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준오헤어]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177	4,000일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준오헤어]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총 [1,400]천원이며,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광고	소계					
	광고선전					
판촉	소계	(비공개)	1,400	(비공개)		

## 11. 가맹금 예치

귀하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없음.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	피고	사건번호	최종 법원명	판결(선고)일자	청구 취지 및 내용	판결 또는 화해 내용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준오헤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점포의 임대비용, 인테리어 공사 비용, 집기 구입비용 등을 해당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은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귀하의 요청에 의해 다음의 경우에 가맹본부의 채량으로 대여금을 귀하에게 선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신구매장 오픈 시, 매장 리뉴얼 시, 매장 이전 및 확장 시, 주요 기구, 가구 및 전 열기 등 교체 시.
- 2) 매출 부진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 발생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 3) 기타 가맹본부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때.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귀하가 준오헤어 가맹사업 시작 시, 가맹본부에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없습니다.		
보증금	귀하가 준오헤어 가맹사업 시작 시, 가맹본부에 부담하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 : 귀하가 준오헤어 가맹사업 시작 시, 가맹본부에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없습니다.
- 2) 보증금 : 귀하가 준오헤어 가맹사업 시작 시, 가맹본부에 부담하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해당 없음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83,000 ~ 391,000]	[4,575~ 4,888]			
필수설비(정착물)	협력업체 또는 자체 조달	20,000(40 평기준)~ 50,000(80 평기준)	[500~625]	설치후 3주내	설치 전 계약취소	시술의자, 삼푸도기 등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140,000~3 08,000 (40평~80 평기준)	[3,500~ 3,85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이후	공사 전 계약취소	3.3㎡ 기준 3,500,000 ~ 3,850,000
신규 교육 시 소요되는 비용	해당 거래처	약 3,000		개별 구매 시	구매 후 사용 또는 소비 이전	신규 교육(무상) 기간 중 가맹희망자 및 임직원의 식비, 교통비, 소모품비 등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해당 거래처	20,000(40 평기준~30, 000(80평 기준)	[375~ 5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공급 전 계약취소	소모품비, 판촉활동비 등
부동산 보증금 및 임대료 또는 전대료	협력업체	임대조건( 지역, 면적 등)에 따라 상이함		반환되지 않음	후불 형식으로 반환 불가	
카드단말기	협력업체	별도 계약에 따름		별도 계약에 따름	별도 계약에 따름	2024년 거래금액 없음
초도물품	협력업체 또는 자체 조달	매장에 따라 상이함		거래 업체에 따라 상이함	거래 업체에 따라 상이함	염색재료, 폼재료 등 미용재료

[인테리어 비용 :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 쇼핑몰 내(In Shop)에 가맹점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3.3㎡당 3,500,000원 기준으로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하고 일반 Road Shop 으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3.3㎡당 3,850,000원 기준으로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In Shop 40평 기준으로는 인테리어 비용이 140,000,000원 소요되고 Road Shop 80평 기준으로는 인테리어 비용이 308,000,000원이 소요됩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점포개발팀 (전화:02-548-1582) 김영대 전무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설치 장소를 제시 → 해당 입지에 대한 통행인의 수, 교통량 및 질, 통행인들의 특성, 유행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입지 적정성에 대한 의견 전달 → 가맹희망자의 최종적인 입지 선정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미용사 자격증을 소유할 것 준오헤어 경력 10년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준오헤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한편, 귀하가 준오헤어 가맹사업 시작 시, 가맹본부에 부담하는 가맹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맹금을 분할 납부하는 것도 해당 없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권사용료	(주)준오뷰티	월0~3,850	협의하여 조정	반환되지 않음	후불 형식으로 반환 불가	지역, 면적에 따라 상이함
경상로열티	(주)준오뷰티	영업이익 금액의 50%한도	익월 말일 (협의하여 조정)	반환되지 않음	후불 형식으로 반환 불가	영업이익에 따라 상이함
매장 임대료 또는 전대료	협력업체	월3,000 ~60,000	임대조건에 따라 상이함	반환되지 않음	후불 형식으로 반환 불가	지역, 면적에 따라 상이함
IT 솔루션 시스템 사용료	협력업체	매출 금액의 1% 한도	익월 10일내	반환되지 않음	후불 형식으로 반환 불가	매출에 따라 상이함
경영서비스 수수료	협력업체	영업이익 금액의 10% 한도	익월 말일 (협의하여 조정)	반환되지 않음	후불 형식으로 반환 불가	영업이익에 따라 상이함
세무서비스 수수료	협력업체	별도 계약에 따름	별도 계약에 따름	반환되지 않음	후불 형식으로 반환 불가	
리스료		해당 없음				
광고 분담금		행사에 따라 유동적				
판촉분담금		행사에 따라 유동적				
교육훈련비		발생시 별도 협의에 따름				2024년 발생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권장업체와 별도 계약 또는 시장에서 자체 조달	발생시 별도 협의에 따름	발생시 별도 협의에 따름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협력업체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		연1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재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1년 1회	문의: 회계팀 (02-548-0605)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년 1회	문의: 회계팀 (02-548-0605)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 계약 시, 당사에게 지급하는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 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준오헤어]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전 서면 승인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 과정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당사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준오헤어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지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가 (주)준오뷰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준오헤어]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당사 또는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의 내용 및 그 거래상대방 등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가맹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귀하와 협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준오헤어]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 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가 [준오헤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당사가 [준오헤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용서비스 미용제품	이외의 서비스 및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귀하가 상품·용역을 판매함에 있어 그 고객을 지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커트	10,000~100,000	개별 공지	2024.12월 기준
염색	80,000~250,000	"	"
펌	30,000~350,000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가맹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미용실업	준오헤어/JUNO HAIR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km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대형마트, 쇼핑몰, 극장, 멀티플렉스, 관공서, 기업체, 학교, 시장, 지하상가, 역사 및 터미널 내 상가, 공항, 호텔, 대학교 내, 종합병원, 기차역, 호텔, 콘도, 리조트, 대형아울렛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가맹계약서에 명시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준오헤어’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준오헤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사항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99.9312%	0%	0%	0.0688%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준오헤어]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계약종료의 통지 없이 계약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계약은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정기납입경비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8조 2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8조 2항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사업장·시설물·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8조 2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8조 2항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8조 2항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8조 2항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9조 1항
○ 가맹본부의 영업방침 및 운영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거나 가맹본부의 브랜드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경고를 받고도 15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9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9조 1항
○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이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9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동종 가맹점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가맹점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그와 업무를 제휴하는 경우	9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영업지역을 변경하거나,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이전한 경우	9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지정된 영업지역 외에서 영업활동을 한 경우	9조 1항
○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9조 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9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9조 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9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9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9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9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 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9조 2항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당사가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 수정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게 되는 예상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 운영권 환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sup>②</sup>	양도 절차 <sup>③</sup>	비고 <sup>④</sup>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2개월 전에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회계팀 (02-548-0605)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에 따른 비용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일지라도 당사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상속, 대리행사,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당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귀하가 [준오헤어]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미용업	계약기간 중 경업은 불가합니다.	문의: 회계팀 (02-548-0605)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준오헤어]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에 대하여 연중 무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는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 ~ 20:00 (10시간) (예시) 협의하에 결정	연중 무휴(명절 당일 휴업)	문의: 회계팀 (02-548-060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규모에 따라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준오헤어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나, 필요에 의하여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맹점사업자와 별도 협의에 따라 나누어 부담합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 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행사에 따라 유동적 (별도 약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광고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시 전체 적용
	상품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가맹점 모집 광고는 하지 않음			
관측행사	할인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별도 약정)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관측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를 시 전체 적용
	증정행사				
	팸플렛 등 제작				
	기타 개별행사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제휴행사	할인카드, 멤버십 카드 서비스로 인한 가맹사업자의 비용부담 발생 시 별도 약정		할인서비스 등의 종료시까지  관측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를 시 전체 적용	

[가맹점의 총매출액의 비율에 따라 분담되는 광고비에서 총매출액은 직전 6개월간의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관측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관측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사전에 광고 및 관측활동 등에 관한 사항(명칭, 할인금액 등 행사의 내용 등)을 당사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반 광고물 및 사인류는 당사에 등록된 로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제작 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인 광고·관측활동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100% 부담하기로 합니다. ]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어느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가맹점사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가 본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맹본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가맹점사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가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9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90일 내외	183,000~391,000
가맹희망자 문의	- 자격을 갖춘 가맹희망자 문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90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90~8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80~75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70	
가맹금 예치	- OO기관에 가맹금 예치	해당 없음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70~68(2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65(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40평~80기준)	D-60~5(20일)	140,000~308,000
필수정착물 구입	- 시술의자, 샴푸도기 등	D-15~10(5일)	20,000~50,000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5~10(5일)	교육비 외 실비 약 3,000
기타 개설준비	- 소모품 구입, 판촉활동 등	D-5~1(4일)	20,000~30,000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 및 비용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 및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구는 별도로 없고 당사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	분쟁 해결 절차	비고
관련 부서 (회계팀)	분쟁 해결 신청 → 접수 → 사실관계 조사 (15일 내외) → 협의 및 결정	문의: 회계팀 (02-548-0605)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 행사비	가맹점 오픈시 판촉인원 파견	가맹점의 매장면적, 예상매출액에 따라 판촉인원 수 차등 지원	오픈일로부터 30일간	판촉인원 파견에 대한 비용부담은 없으며 전단지, 기념품 등의 판촉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 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 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 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회계팀 (02-548-0605)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 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 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 를 설명	경영지도의 성격에 따라 상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부담)	문의: 회계팀 (02-548-0605)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준오헤어]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조기 안정화	오픈 전 컨설팅	신규 오픈시	오픈일로부터 1개월 전	오픈 교육 외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준오헤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서비스 교육 기술 교육 등	집단 강의 실습교육 실습 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영업개시 이전	필수 교육
보수 교육	필요에 따라 실시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준오헤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천원)(VAT포함)	비고
신규 교육	7일	해당 없음	교육 기간 중 실비 약 3,000천원 발생 가능
보수 교육	필요에 따라	협의에 따라 결정	

※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계약 체결 후 영업개시 이전까지 이수하여야 하는 신규 교육의 비용을 별도로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기 신규 교육 실비 약 3백만원은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의 실비이며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교통업자, 숙박업자, 요식업자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 및 직원들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3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신설)**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